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



의왕시체육회 규정

- 2016. 2. 19 통합 의왕시체육회 규약제정
- 2018. 12. 의왕시체육회 규약개정

의왕시체육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체육회의 지회인 의왕시체육회 《(구)경기도체육회의 의왕시지부와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의왕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명칭은 의왕시체육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로 하며,

영문으로는 “THE Uiwang City Sports Council”로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체육운동을 전 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시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의왕시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의왕시종목단체(이하 “종목단체” 라 한다) 및 동체육회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관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경기도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 및 경기도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전문체육 육성 사업 (학교 운동부 선수, 전문지도자 지원, 경기기술의 연구향상등)
5. 지역체육인의 권익증진, 복지 및 교육사업 관련
6.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과 제반 사업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 프로그램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진흥 및 연계사업
9.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지역체육 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산업
11. 체육공로 유공자 표창등 포상
12. 체육운동 및 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통계, 선전계몽, 간행물 발간
13. 장애인체육 보급활동, 지원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제반사업 및 업무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시군지부 소관업무
14. 의왕시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5. 의왕시로부터 목적에 맞게 수탁 받은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제반사업
16.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의왕시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조직) ① 종목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

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의왕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
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의왕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
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동체육회는 의왕시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의왕시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시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7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권리와 의무)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정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2. 60일 이상 장기간 시 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3. 국제 및 국내 체육기구와의 분쟁
4.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 지정 된 시종목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본회의 정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 개최시 재적대의원 수에

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⑤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36조에 따라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요구한 경우 시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경기도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경기도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본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본회에 가입한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회의 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⑤ 도종목단체가 결성되지 않아 도종목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종목이 시체육회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할 수 있다.

제3장 총 회

제10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동체육회의 장

②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3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시체육회의 회장이 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임원은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9. 부회장 및 이사의 임면동의
10. 그 밖에 중요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

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2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가. 회장 1인

나. 부회장 10인 이내

다. **이사26인 이상5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라. 감사 2인

②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하되,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사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시체육회, 도종목단체, 시종목단체, 동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시체육회, 도종목단체, 시종목단체, 동체육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자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체육 전문가 1인 및 부시장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고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 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계인사와 동체육회 임원이 재적인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 선임하여야 한다.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경기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교육장 또는 부교육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제10조 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포함)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

⑧ 경기도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시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본회(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 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본회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교육장 또는 부교육장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38조에 따른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경기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회의원은 시체육회 임원, 고문, 명예직 임원, 자문위원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경기도체육회 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 졌을때

3.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시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경기도체육회가 요구한 경우 관리단체 지정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시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시점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제32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본회의 회원인 시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종목단체의 임원은 경기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③ 시종목단체의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시종목단체 및 다른 시종목단체 및 경기도규모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34조(동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지회인 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② 동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동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④ 동체육회의 조직, 운영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동체육회의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동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동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동체육회의 임원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6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인사위원회, 상벌 및 조정중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인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본회, 시종목단체, 동체육회의 규정관리

2. 본회, 시종목단체, 동체육회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3. 본회, 시종목단체, 동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 관계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체육회 관계 단체에서 임·직원인 자
- ④ 이 밖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체육회 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가 설치하는 제37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19명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0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1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2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의왕시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경기도체육회 및 도종목단체, 본회 및 시종목단체, 동체육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경기도체육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감사 등) ①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47조(경기도체육회감사·징계 등) ① 경기도체육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③ 시체육회 및 그 회원 또는 지회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본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경기도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경기도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경기도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대한체육회의 「감사규정」과 경기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48조(본회의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에 대한 감사 및 조치) ① 본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등의 단체는 그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등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③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등이 시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체육회는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단체와 관계자에 대

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시·군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는 대한체육회의 ‘감사규정’ 과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의왕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정의 변경) 본회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① 본회는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규정」에 따라 본회의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당해 본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회의 정관(또는 규약) 및 직제규정의 제·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경기도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④ 본회의 규정 및 제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규정 개정 시 시비보조예산이 추가로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 주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① 본회의 규정은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 규정과 본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시종목단체 및 동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규정, 본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종목단체 및 동체육회가 경기도체육회 규정 및 본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각종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본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선출) 제25조의 시장의 권위 시에는 그 권한대행을 추대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의 (구)경기도체육회의 시·군지부인 (구)의왕시체육회, (구)경기도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의왕시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전 (구)의왕시체육회 및 (구)의왕시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본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약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의왕시체육회 및 (구)의왕시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본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이 규약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④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⑤ 본회 임원(시장인 경우, 교육장 및 부교육장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예외로 한다)의 중임횟수에는 (구)의왕시체육회 및 (구)의왕시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⑥ 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의왕시경기단체와 (구)의왕시종목별연합회

(구)동체육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이 규약 시행 당시 (구)의왕시경기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의왕시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해 (구)의왕시체육회 또는 (구)의왕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 허용을 결정한 경우 본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의왕시경기단체와 (구)의왕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구)의왕시체육회 및 (구)의왕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제5조(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구)의왕시체육회와 (구)의왕시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의왕시체육회의 직원이 된다.

2019 의왕시체육회 이사회 운영규정(수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 이사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이 규정은 의왕시체육회(이하 “본회” 라 한다)에서 체육회 임원(수석부회장·부회장·상임이사·감사·이사)회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3조(분과위원회) 삭제

제2조 (이사회 구성)

- ① 이사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한다.
(본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 26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한다) - 상위단체 규약개정
- ② 의왕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대의원(종목단체장, 동체육회장) 및 체육단체 임원(종목단체, 동체육회)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군체육회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 될 수 있다.
(단, 현재 본회에 가입된 임원에 한해서는 2020년 임기까지 제한을 받지 않음)
- ③ 의왕시체육회 신입임원 가입 시 의왕시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지자에 한해 가입가능
- ④ 이사회 의결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등)

제3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②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③ 부회장 및 이사의 임명동의 및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 ④ 총회안건상정에 관한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 ⑥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 ⑥ 기본재산 편입에 관한사항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4조 (회비납부)

- ① 본회의 수석부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은 해당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비를 당해 연도 6월까지 납부해야한다.<변경 2011.12.14.> <변경 2018.4.16.>

- ① 본회 임원은 매년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본회 지정계좌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하며, 4월 30일까지 완납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며 또한 상임위원회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동탈퇴 처리 할 수 있다.
- ② 본회 이사가 회비 납부 후 이사회 의결로 인해 새로운 직위(상임이사/부회장/수석부회장)로 선임될 경우 이사회 의결 익일부터 당해 연도 남은 일수를 산정하여 1개월 이내로 추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단, 이사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한 금액에 관해서는 반환할 수 없으며, 신임이사는 연중 어느 때 가입하여도 기존이사와 같이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본회 당해연도 이사회비 미납 후 사퇴 및 탈퇴한 이사는 2년 동안 본회 임원으로 재 가입할 수 없으며, 또한 기한 이 지난 후 가입 할 시에는 미납 회비까지 납부해야지만 이사 가입이 가능함

1. 수석부회장 : 연간 1,000만원 2. 부 회장 : 연간 200만원
3. 상임이사 : 연간 70만원 4. 감사 및 이사 : 연간 50만원

- ② 본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탈퇴규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탈퇴하게 할 수 있다.

1. 이사회 및 총회에 연속 3회 이상 무단불참 하였을 경우
2. 회비를 당해 연도 4월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 2011.12.14> <변경 2018.4.16>
3. 이사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였을 경우
4. 이사회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5. 이사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제6조 (제한 규정) 삽입

본회 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본회 스포츠평정위원회에 의결을 통해 임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결산 및 시행세칙)

- ① 회계연도 종료 후 본회 감사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비 예산의 집행시에는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정산절차에 준하여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집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 ③ 신임이사 가입서류
 - 가) 이력서 1부.
 - 나) 임원인준 신청서 1부.
 - 다) 주민등록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라) 반명함판 사진 2매.
 - 마) 개인정보활용동의서1부.

[별지 제1호서식]

				이 력 서			
				성 명	한글(한문)	인	주 민 등 록 번 호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생(만 세)
주 소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기입			
전화번호				자택 :		H.P :	
호적관계				호주와의 관계		호주성명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령청
			학교졸업사항				
			경력사항				
			[전]				
			[현]				
			직업사항				
			체육회 추천인 기재 [체육회]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인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수집 · 이용하려는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체육회 이사가입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체육회 이사가입 (탈퇴시까지 기본 정보 제공)	용도 (보험 및 행사·대회참가등)	체육회 이사가입 (탈퇴시까지 기본 정보 제공)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임원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e-mail		연 락 처	
주 소 (도로명주소)			

본인은 ()체육회 가입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체육회장 귀하